

## 신종증권 및 파생금융상품 사례

### 1. 概要

- 증권업 대상이고 기업 자금조달수단인 동시에 투자자의 투자수단인 유가증권은 크게 “사채와 주식”으로 구분됨
  - 商法은 전통적인 사채외에 전환사채(CB), 신주인수권부 사채(BW)를 규정하고 있으며
  - 증권거래법은 추가로 이익참가부사채(PB), 교환사채(EB) 등을 허용하고 있음
- 『금융의 증권화(securitization)』 현상으로 선진국에서는 새로운 유형의 첨단 상품이 개발되고 있는바, 우리 자본 시장에서도 이러한 상품이 개발, 유통, 투자되도록 할 필요
  - 전통적인 주식과 채권의 중간 형태인 혼합형(hybrid) 유가증권이 등장
  - 특히,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 허용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상품개발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
- ⇒ 기업의 특수한 성격과 투자자의 다양한 위험선호 등을 감안한 『맞춤형 상품』 개발이 가능해져 다양한 주식 발행 및 투자수요를 확충할 수 있음

## 2. 선진국의 사례 : 정형화가 어렵기 때문에 몇 가지를 예시

### 가. 주식옵션

- 주식 투자자가 옵션(put option) 매입하는 경우 주식투자에 대한 위험을 헤지가 가능
  - \* 장외파생금융상품 업무가 허용되는 증권회사가 동 옵션을 투자자에게 판매(투자자는 옵션 매입에 따라 프리미엄을 지급)

### 나. 주가나 지수와 연계한 상품

- 다우나 나스닥 등 주가지수에 연계한 파생상품을 만들어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을 설계(현재 주가지수를 70으로 가정)
  - 만기 2년 채권을 판매하면서 지수가 한번이라도 140을 넘을 경우에 수익률 100% 대신 10%의 수익률 보장  
대신, 지수가 100%이상 상승하지 않을 경우를 전제로 30% 상승하면 수익률을 30%를 보장하고 10% 하락하면 원금을 보장
- 기관투자자는 주가가 상승할 경우 수익률은 낮아지지만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원금이 보장되어 위험을 회피

### 다. 강제전환사채(Mandatory Conversion Bond : MCB)

- 강제전환사채는 투자자들이 만기까지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사채로 보유하는 경우 발행사가 강제적으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 전환증권
  - \* 전환사채는 투자자가 주식으로의 전환여부를 결정